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0
----------	------

제출년월일 : 2007. 4.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강화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표창대상 및 표창장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창대상에 기관 및 외국인 추가(안 제2조)

나. 표창장 수여대상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1) 장기근속자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2)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3)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2조중 “행적이 현저한 자와”를 “행적이 현저 하거나”로, “기관단체 및 개인”을 “기관,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구정의 근대화”를 “구정의 선진화”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6.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표창은 매 분기별로 시행한다.

제13조중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를 “표창대상자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u>행적이 현저한 자</u>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u>기관단체 및 개인</u>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u>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u> 1. (생략)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u>구정의 근대화</u>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u>〈신설〉</u>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3. (생략)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생략) ② <u>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u>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제2조 (표창대상) ----- -----<u>행적이 현저 하거나</u> ----- ----- <u>기관,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u> ---. 제5조(표창장) <u>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u>구정의 선진화</u> ----- 3. <u>장기근속자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u> 4. <u>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u> 5. <u>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u> 6. <u>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u> 제7조(감사장)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표창은 매 분기별로 시행한다.</u>

현행	개정안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u>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u>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u>표창대상자를</u> ----- -----. ② (현행과 같음)